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항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의 불편을 경감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 등을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비행에 대한 승인 신청 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6643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야간 비행승인 권한을 지방항공청에 위임하고,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의 안전투자공시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무인비행장치 신고 대상 확대(안 제24조제5호)

드론 분류기준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에 따라 드론 신고 대상을 자체무게(연료 제외) 기준에서 최대이륙중량으로 변경하고, 연료를 포함하여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초과인 비행장치를 신고토록 보완한다.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업무 지방청 위임(안 제26조제1항제46호의2)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정기검사업무 등 집행

업무가 지방청으로 위임되어 있으나,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집행업무는 제외되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함

다. 무인비행장치 비행승인업무 지방청 위임(안 제26조제1항제55호의2)
본부에서 승인하고 있는 특별비행승인 권한을 지방항공청으로 위임
하여 비행제한구역에서의 비행승인업무와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개선
라.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육성업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안 제26조
제6항제11호)

항공안전법 제126조 제7항에 따라 추진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효율적 활용과 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기 위함

마. 항공교통사업자가 공시하고자 하는 안전투자의 세부내역 등을 확인
하는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 근거 마련(안 제26조제10항제6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안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0. 2. 00. ~ 3. 00.) 결과,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호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배터리 무게를 포함한다)가 12킬로그램”을 “최대이륙중량 2킬로그램”으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 법 제131조의2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
2. 「항만공사법」에 따른 인천항만공사
3.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기술공사
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5.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6.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남부발전
7.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8.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1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1.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1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13.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1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5.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
16.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17.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1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21.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2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3. 「한국감정원」에 따른 한국감정원

제26조제1항제15호의2 중 “법 제48조제6항”을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훈련운영기준 변경,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제18호 중 “법 제58조제2항제4호”를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항공안전관리 시스템의 변경승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6호의2 및 제55호의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6의2. 법 제1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지정 취소

55의2. 법 제129조제5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의 야간비행등을 위한 비행승인

제26조제6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법 제126조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업무
제26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5조제8항”을 “법 제135조제5항제12호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35조제5항제12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가 공시하고자 하는
안전투자의 세부내역 확인 등 안전투자의 공시에 관한 업무
별표 5 제2호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조. 법 제133조의2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법 제166조제1항 제15호	250	375	5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의2의 신설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1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2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		
1. ~ 4. (생략)		-----		
5.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배터리 무게를 포함한다)가 1		-----		
2킬로그램 이하인 것		-----		
6. ~ 9. (생략)		-----		
<신 설>		-----		
		1. ~ 4. (현행과 같음)		
		5. ----- <u>최대이륙중량 2킬로그램</u> -----		

		6. ~ 9.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법 제131조의2제2항에 따		
		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		
		한다.		
		1.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		

2. 「항만공사법」에 따른 인천
항만공사
3.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기술공사
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5.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6.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남부발전
7.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8.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
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
흥원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
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1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1.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1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
른 한국수자원공사
13.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14. 「 <u>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u> 」 <u>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u> 15. 「 <u>해양환경관리법</u> 」에 따른 <u>해양환경관리공단</u> 16. 「 <u>전기사업법</u> 」에 따른 <u>한</u> <u>국전기안전공사</u> 17. 「 <u>한국환경공단법</u> 」에 따른 <u>한국환경공단</u> 18. 「 <u>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u> <u>법</u> 」에 따른 <u>한국산업안전보</u> <u>건공단</u> 19. 「 <u>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u> <u>법</u> 」에 따른 <u>한국원자력안전</u> <u>기술원</u> 20. 「 <u>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u> <u>관한 법률</u> 」에 따른 <u>한국임</u> <u>업진흥원</u> 21. 「 <u>도로교통법</u> 」에 따른 <u>도</u> <u>로교통공단</u> 22. 「 <u>한국철도공사법</u> 」에 따른 <u>한국철도공사</u> 23. 「 <u>한국감정원</u> 」에 따른 <u>한</u> <u>국감정원</u>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	-----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1. ~ 15. (생략)

15의2. 법 제48조제6항에 따른
교육훈련체계 변경에 관한 검
사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
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검사

15의3. ~ 17. (생략)

18. 법 제58조제2항제4호(국제
항공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및 변경승인

18의2. ~ 46. (생략)

<신설>

47. ~ 55. (생략)

<신설>

56. ~ 60. (생략)

② ~ ⑤ (생략)

-----.

1. ~ 15. (현행과 같음)

15의2.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훈련운영기준 변경, 같은 조
제6항-----

15의3. ~ 17. (현행과 같음)

18.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해
당하는 자에 대한 항공안전관
리시스템의 변경승인 및 제4
호-----

18의2. ~ 46. (현행과 같음)

46의2. 법 제117조제1항 및 제4
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
육기관의 지정(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지정 취
소

47. ~ 55. (현행과 같음)

55의2. 법 제129조제5항에 따
른 무인비행장치의 야간비행
등을 위한 비행승인

56. ~ 60.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 10. (생략)

<신설>

⑦ ~ ⑨ (생략)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1. ~ 5. (생략)

<신설>

⑥ -----

-----.

1. ~ 10. (현행과 같음)

11. 법 제126조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 조종자의 육성에 관한 업무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 ----- 법 제135조제5항제12호 및 제8항-----

-----.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135조제5항제12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가 공시하고자 하는 안전투자의 세부내역 확인 등 안전투자의 공시에 관한 업무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255